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60
----------	---------

제출연월일 : 2019년 10월 일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동 단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캠프 운영 및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캠프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5호)

나.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지원 조항 신설(안 제13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2019년 예산에 48,000천원 반영되어 있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8.28. ~ 9.17.)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 사전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자원봉사캠프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는 동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캠프 정의 및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지원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상담가활동비로 기 반영된 예산(구비 48,000천원) 외 추가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 행정관리국 협치분권과 과장 이 미 순**

(담당 : 사회7급 이인선 / ☎ 2600-5335)

#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개정사유

- 동단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캠프 운영 및 지원 확대 근거 마련

## □ 주요내용

- 자원봉사캠프 정의 조항 신설
-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지원 조항 신설

##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조례에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19 - 30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규칙」 일부개정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김태환
입안주무부서	협치분권과	통보(조치)일		2019. 9. 1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서울강서032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협치분권과	
	담당자명	이인선	전화번호 02-2600-533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8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협치분권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캠프 정의 조항 및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동단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캠프 운영 및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입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8월 26일  <b>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b> (담당자/연락번호 : 최은영/02-2600-6762)  협치분권과장 귀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